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 략) (신 설) 2. (생 략) 3. (생 략) 4. (생 략) 5. (생 략)	**제3조(구성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.... 1. (현행과 같음) 2. 구의원 3. (제정안 제2호와 같음) 4. (제정안 제3호와 같음) 5. (제정안 제4호와 같음) 6. (제정안 제5호와 같음)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.	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.....2년..... ....

※ 여타부분은 제정안과 같음